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이 선 화

ETRI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연구원,
TTA 지적재산권연구회 의장



정 석 호

KT 연구개발원 표준연구단 대리,
TTA 지적재산권연구회 위원

본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청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TTA의 지적재산권 연구회 위원들이 각 기구의 관련 지침들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히 정리·요약하여 연재 할 예정입니다. 본 호에서는 I.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II. 국제표준화기구(ITU)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I.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 II. 국제 표준화기구(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 III. 유럽 표준화기구(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
- IV. 미국 표준화기구(ANSI, T1)의 지적재산권 정책

V. 일본 표준화기구(TTC, RCR)의 지적재산권 정책

- VI. TTA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안)
- VII. 결론 및 국내 대응방향

I.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1. 개요

전기통신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세계적으로 “One World, One Network”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증대와 통신설비의 공동건설 및 이용등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 증가는 표준화의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표준’이 치열한 통신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다른

어떤 생산물이나 제품보다도 경제성이 큰 ‘제품(Products)’으로, 또는 매우 생산성 있는 비지니스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¹⁾

반면에, 전기통신분야가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동 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 공업소유권을 획득하려는 기술개발은 증가일로에 있으며²⁾, 많은 국가, 기업들은 이 분야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선진 각국들 간에도 치열한 기술분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저마다의 근거를 내세워 후발국가들에게 기술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이다.

이러한 표준화 요구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상충된 요구는 어떻게 하면 양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화스럽게 추진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범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지역 및 국가별로 자신들의 표준을 세계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기술들을 되도록이면 배타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이윤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에 지적재산권이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처리지침 내지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구 CCITT(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이하 CCITT라 함)는 1976년 처음으로 특허의 취급에 관한 검토를 한 이후 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1985년 초판을 발간하였다. 이후 내용에 변화없이 새 버전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현재는 조직 개편 이후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이하 TSAG이라 함) 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다.³⁾ 유럽의 경우는 EU(European Union)와 같은 지역별 경제권역화를 통하여, 그리고 각종 표준화기구들을 통하여 개별 국가에 의한 국제적 주도권 장악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인접 국가와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권역의 공통표준을 추진하고 배타적 기술공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 표준화기구인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는 설립 이듬해인 1989년부터 지적재산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으며, 1993년 3월 총회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 Undertaking 을 잠정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도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Committee T1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기통신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는 이미 1989년에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기본지침과 이 지침의 운용세칙을 마련하였으며, 전파시스템분야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RCR(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의 경우도 1991년에 처리지침과 운용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의 표준과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경우의 처리를 위한 기본지침을 작성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한국통신기술협회의 경우도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개념, 그 관계-갈등 발생 원인, 갈등 발생 양상, 갈등 상황-, 그리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어 각 기구별로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본 호에서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라 함)의 지적재산권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2.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간의 갈등발생 원인

정보통신 표준은 서로 다른 지역간, 서로 다른 기종간의 의사소통의 방법과 절차문법 등에 대한 사전 규약이고, 표준화는 그러한 규약을 제정하는 절차이다. 특히, 정보통신 표준화는 공업표준이나 사회규제의 기준과는 달리 정보와 통신의 융합, 소프트웨어의 다양화, PC와 네트워크의 연계, 이동 통신 및 위성장비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상이한 환경하의 망간 상호접속성과 상호운용성이 추구되는 기술적, 서비스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영업상의 신용, 산업질서 유지 등에 관한 표식에 대한 권리이다. 정보통

신에 있어 발명 내지 기술혁신은 치열한 시장경쟁 환경하의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지속적인 발명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창의적 지적활동 산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속, 용이, 정교한 복제 및 재생 기술의 개발과 생산 및 전달된 정보의 새로운 이용 형태의 등장에 따라 정보통신 창작물의 보호도 고려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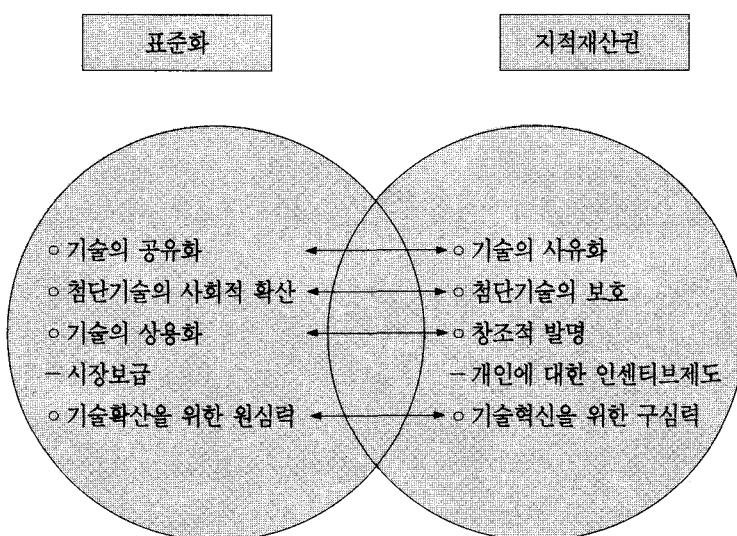
이처럼 이론적으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은 상충 관계에 있다. 즉, 표준화는 기술의 공유를 도모하며, 혁신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지적재산권은 기술의 사유를 도모하며 첨단기술을 사유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가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지적재산권은 그 원천이 되는 창조적 발명과 혁신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따라서 표준화가 사회적으로 필

요한 기술확산을 위한 원심력이라면, 지적재산권은 기술혁신을 위한 구심력이다.

이러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상충적인 관계는 기술개발 및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한 국제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도기술을 가진 선진국은 자국의 핵심기술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하여 세계 네트워크와 시장을 장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특히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나오는 기술혁신의 결과 시장에서 도출되는 부가가치가 과거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급격한 기호변화에 따라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표준개발에 허용되는 시간적 여유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관계



3.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갈등발생 양상 및 갈등상황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은 특정 지적재산권에 배태된 이익과 특정 표준의 보편적 채택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이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적재산권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특정 지적재산권에 배태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표준화의 가능성과 방법이 달라진다.

〈표 1〉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이 관련되는 경우 갈등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표준화 과정에서 특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크고 동시에 특정 지적재산권에 배태된 이익도 큰 경우라면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가 사실상 가장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특히 이

지적재산권이 필수지적재산권(Essential IPRs)⁴⁾일 경우 갈등은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많은 표준화기구들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특정 지적재산권에 배태된 이익이 크지만 표준화기구가 그것을 표준화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지적재산권은 사적재화 또는 사유재산으로 남아있게 된다. 또한 특정 지적재산권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그 지적재산권에 배태된 이익이 적은 경우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협상을 거쳐 표준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에 배태된 이익도 적고 표준화에 대한 관심도 적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신기술의 등장에 의하여 열등한 기술로서 도태될 가능성이 많다.

〈표 1〉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갈등 발생양상

지적재산권	표준화		표준화기구의 특정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특정 지적재산권에 배태된 이익	크다	갈등	사적재	
	작다	순수한 조정	공공재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억제하는 지적재산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그 표준화를 반드시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그 표준에 순응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에게 정당한 조건하에 표준화를 위한 면허를 공여한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표준화봉쇄(blocking IPR)는 발생하는 않는다. 또한 현실적으로 면허의 공여 용의(willingness) 및 조건(terms and conditions), 그리

고 그에 대한 면허 차용자의 수용 용의와 능력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의한 표준화 봉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봉쇄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특정 단일표준에 대하여 많은 필수지적재산권이 관련되어 있다면, 수많은 면허 공여자가 요구하는 로얄티의 축적적 효과(cummulative effects of royalties)는 표준화를 실제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즉 필수지적재산

권 공여에 대한 로얄티가 지나치게 높아서 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판매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그 지적재산권의 표준화는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 없다.

4. 문제해결 방안

실제 상황에서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지적재산권이 관련되는 경우 표준화의 봉쇄는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하나의 필수지적재산권 소유자가 표준적용의 지역적 범위내에 들어 있는 특정 국가내에서 그 것에 대한 표준화 면허공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비배타성(non-exclusiveness)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 시장 전체에 대한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준화 봉쇄상황이다. 둘째, 하나의 필수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사람이 표준의 지역적 적용 범위내에 있는 시장에 진입할 정당한 권리 를 가진 특정인에 대하여 면허 공여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는 비차별성 조건(non-discrimination)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로, 특정인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적인 상황이다. 세째, 필수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로얄티의 축적규모가 시장진입을 현실적으로 제약할 정도로 큰 경우이다. 이는 합리적 조건(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로, 비합리적인 면허공여 조건의 상황이다.(지적재산권자가 끝까지 면허를 허여하지 않는다 해도 표준화를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필수지적재산권이 표준화를 봉쇄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 가능성은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가급적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투자되기 전에 지적재산권의 면허를 공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이

러한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표준화기구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즉,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이 관련되는 경우 표준화 추진가능한 경우를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①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허여하는 경우 ②유상으로 허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앞에서 언급한 비배타적(Non-Exclusive) 조건,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조건,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Fair and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II. 국제 표준화기구(I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1.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처리지침에 대한 논의-과거

1993년 3월 1일부로 그 명칭과 조직을 ITU-T로 변경한 구 CCITT는 지적재산권 정책과 관련하여 제6차 총회(1976년)에서 분과위원회(Committee-A)가 작성한 CCITT 특허정책의 초안을 처음으로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CCITT의 권고안에 포함되어진 특허의 대가에 대하여 '무차별적 토대 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서의 라이센스 공여에 대한 유·무상 여부였다. 그러나, CCITT 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음에 따라 그후 CCITT 총회에서는 특허정책을 정식으로 심의하지 않았고, 각 연구위원회에서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CCITT 정책이 결정되었다. 그러다가 1993년도부터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Sector) 산하에 신설된 TSAG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지적재산권⁵⁾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그간의 연구위원회별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 XV 연구위원회(전송방식과 장치연구)가 특허 등에 관한 방침을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여기서 CCITT 권고의 목적은 국제통신의 상호접속성을 권장하는데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CCITT 권고의 활용 및 이용 등은 CCITT 권고에 관련된 특허 소유권 등의 배타적인 남용을 피하고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접근(access)을 허용한다는 점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CCITT는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의 증명, 정당성 또는 범위에 대하여 권위있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이 방침이 사실상 CCITT 특허정책이 된 것이다)

제 VII 연구위원회의 1984년 특허정책은 연구위원회의 각 회원이 심의 중인 표준과 관련된 특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최소한 무차별적, 합리적 대가로 특허권을 공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허권자의 학약서는 일반 회의 문서로 공개되어 연구위원회의 회원은 특허권자의 라이센스 계약 교섭을 표준안의 정식 채택시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였다.

1985년 ‘CCITT 특허정책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CCITT Patent Policy)’ 초판이 몇몇 CCITT 연구반들의 초기 활동결과에 의거 발간되었다. 이후 몇년간 뚜렷한 내용의 변화없이 몇 개의 버전이 발표되었다. 현재 적용중인 지침 역시 내용에 별 변화없이 1993년 7월에 채택된 ‘Statement on TSB(Telecommunications Standardi-

zation Bureau, 이하 TSB라 함) Patent Policy’이다.(상세내용 ‘4. TSB의 특허정책에 대한 성명서’ 참조) 이 성명서의 목적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권고안(Recommendations)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했을 때 연구반원(Study Group)들에게 명료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 성명서는 연구반원들이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복잡한 내용을 모른다고 간주하고, 개발중인 권고가 지적재산권 요소를 충분히 혹은 부분적으로 포함할 때 생길지도 모를 세가지 경우-(1)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의 양보하여, 특별한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없이 무상으로(no particular conditions, no royalties) 자기 특허의 이용실시를 인정하는 경우, (2)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의 무상으로 양보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조건하(no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에서 전세계의 ITU 권고안 이용자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토대위에서 라이센스 계약에 응하는 경우 (3) 특허권자가 (1), (2)에 정한 조건들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를 다루는 체크 리스트로서 작성되었다.

2.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처리지침에 대한 논의-현재

1993년 10월 ITU-T TSAG 회의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토의사항에 따라 TSB 국장은 ‘TSB 특허제도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를 보완할 목적으로 차기 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8월 TSAG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다음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문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⁶⁾

현재 ‘TSB 특허제도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작성의 이론적 배경은 ISO, IEC, CEN/CENELEC, ANSI 등 다른 표준화기구들과 동일하다. 즉, 이를 표준화기구들은 기구 내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를 최소화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라이센스, 로얄티문제 등)의 해결을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함에도 불구하고(때문에) 시행지침(Code of Practice)은 모든 연구반에 배포되어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참고가 되어 CCITT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제적으로 몇가지 경우-이런 경우에도 해결되었다-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연구반 내에서 발생되었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1) 신기술(예: 코딩 알고리즘)의 출현과 함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권고초안 수가 증가하고 있다.
- (2) 국제적인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자가 과거보다 관대하지 못하다.
- (3) 연구소와 대학 등의 신규회원들은 지적재산권 로얄티에 의해 그들의 비용을 최대한 만회하려고 노력한다.
- (4) 마찬가지로 새로운 중소 제조기업체들이 가능한 많이 그들의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이득을 보려고 하나, 여러 지적재산권자에게 로얄티를 지불해야만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 (5) ETSI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GATT내(그리고 유럽내)의 논의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규모단체를 넘어서 공공 포럼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ITU-T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표준화기구 내에서도 “현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아직까지 유효한가?”, “현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모든 발전에 비추어 변화되어야 하는가? 만

약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3년 10월의 TSAG 회의 이후 TSB 국장은 타표준화기구와 함께 IPR 전문가들과의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시킨 연구활동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TSB 지적재산권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ITU-T와 TSB 외부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지적재산권을 발표하고 등록하는 절차의 개선은 바람직하며 이는 별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ITU에서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처리지침에 대한 논의는 “원칙 유지, 절차 개선”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3.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처리지침에 대한 논의-미래

(1) 원칙의 유지

TSB 국장은 변화하는 지적재산권 환경에서도 ITU-T와 TSB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성명서의 기본원칙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양 당사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장이 자문을 구하고, TSB와 동일한 시행지침(Code of Practice)을 사용하는 어떤 표준화기구도 이러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더욱 확고해졌다. 그 이유는, 첫째,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표준화기구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개입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충원 뿐만 아니라 특허변호사와의 계약이 필요하다. 또한, 설령 비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기구는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성실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이 관련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앞에서 서술했던 방식(…공정하고 합리적인…)으로 유상허여를 한다 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fair and reasonable)’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제조비용, 순익, 기타 등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2) 절차의 개선

특허정책에 대한 원칙은 유지한다 해도 지적재산권을 공개하고 등록하는 절차의 실질적인 개선은 기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록 TSB 특허정책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 1항에는 ‘…표준화를 제안하는 ITU-T 회원기구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들 자신의 것이든 혹은 다른 기구들의 것이든 어떤 알려진 특허나 혹은 출원중인 특허를 TSB에 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요구는 더 자주 그리고, 정식의 절차에 의해 ITU-T 회원기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그런 지적재산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성명서의 1항에 있는 ‘초기단계(from the outset)’라는 문구는 그러한 정보는 가능한 빨리, 다시 말해서 작성하는 권고초안이 사실상 특허요소를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 명백해짐과 동시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이때 초안은 아직 너무 모호하거나 수정을 거쳐야 한다)에는 가능하지 않다. 어떤 경우는 권고 초안이 ITU-T의 규정에 의해 승인절차로 넘겨질 때에야 그 내용이 명백해진다. 이러한 개념에 의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기되었다.(현 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 상세내용은 다음 절 참조).

첫째, TSB 특허정책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 1절의 규정 ‘가능한 빨리 공개함’은 존속시키되 추후 권고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편집상의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

둘째, 이에 덧붙여서 다음의 문구가 ‘결의 1⁷⁾’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각 회람문서(Circular)에 삽입되어야 한다. 즉, ‘지적재산권 보유자인 ITU 회원기구 혹은, 타인이 보유하며 승인을 위해 제안된 권리인의 요소들을 충분히 혹은 부분적으로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알고 있는 어떤 ITU 회원기구도 이 회람문서 내에서의 승인시점 이전에 그러한 정보를 TSB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SB가 위에서 약술한 제안에 의해 요구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빈번히 입수한다면, 그 정보를 각 연구반의 문서에 정리하는 현 TSB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TSB는 ITUDOC내에 공개된 모든 지적재산권 정보를 저장할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들어갔다. 이 DB는 ITUDOC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접속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ITU-T의 특허정책은 TASG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영역을 고려하여,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되 절차의 개선 등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4. TSB의 특허정책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⁸⁾

지난 수년간 TSB는 다양한 방식으로 ITU-T 권고안(Recommendations)과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문제를 다루는 시행 지침(Code of Prac-

tice)을 개발해 왔다. 이 지침의 기본원칙은 간단 명료하다. 권고안들은 특히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들이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복잡한 국제법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ITU-T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는 국제표준으로, 그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전기통신의 호환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네트워크 및 서비스제공자, 공급자, 사용자 등 국제전기통신분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관심사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고안의 적용, 이용(보급)등이 누구에게나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고안에 있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관계된 특허권자에 의한 상업적(독점적)인 남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TSB 시행지침 (Code of Practice)의 유일한 목표이다. 특허(라이센스, 로얄티 등)에서 발생하는 상세한 합의사항 (arrangement)들은 이들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일임된다.

이 시행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ISO도 매우 유사하게 운영됨)

1. TSB는 특허 또는 유사 권리의 증거, 유효성 또는 범위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거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표준화를 제안하는 ITU-T 회

원사들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들 자신의 것이든 혹은 다른 기구의 것이든 간에, 공개된 특허 또는 출원중인 특허를 TSB에 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TSB가 그러한 정보의 유효성을 보증할 능력은 없다.

2. 만일 ITU-T 권고안이 개발되면서, 그러한 정보가 상기 1절에 따라 공개된다면, 세가지 상이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2.1. 특허권자가 그의 권리를 포기한다. 따라서, 누구나 표준안을 특별한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 없이 (no particular conditions, no royalties)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2 특허권자가 그의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조건(no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하에서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으로 면허허여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와 협상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은 ITU-T 관여없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일임된다.

2.3 특허권자가 상기 2.1 또는 2.2 절의 조건들에 응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권고안이 제정되지 않는다.

3. 상기 2.1, 2.2 또는 2.3 절 중 어떤 경우가 적용되더라도 특허권자는 TSB에 확약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확약서에는 상기 2.1, 2.2 및 2.3 절 각각에 명시된 것 이외의 다른 어떠한 부가적 규정이나 조건, 또는 그 밖의 배제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1. 박기식, 이선화, “기술사유의 지적재산권과 기술공유의 표준화 전략”, 월간정보통신시대, 1994. 4.(주) 정보시대. pp.123-128.
2. 박기식, 이선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주요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중심으로-”, 제4회 ITU 교육 프로그램 강연 자료집, 1994. 5. 17. pp.93-107.

3. 박기식,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제4회 전산망 기술 및 표준화심포지움 Proceeding, 1994. 6. 3. pp.5-22.
4. 양동지, 김구수, 장청룡,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분석 연구, 전기통신연구 제6권 제4호 1992.
5. 체신부, 통신표준화에 있어서 공업소유권 취급지침 검토, 표준화연구협의회 발표 자료, 1994. 5
6. TTA(역), 미국 전기통신분야의 표준화 및 지적소유권, 국제전기통신표준화소식, 1991. 6.
7. TTA(역),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의 마찰, 1991. 4.
8. TTA(역), 전기통신관련 국내외 표준화동향 세미나, 1992. 9.
9. Nicholson, Ron and Roger Miselb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ization, Commed Publishing Co., 1993
10. 名和小太郎, 技術基準對知的所有權, 中央公論社, 동경, 1990
11. 石黒一憲, 情報通信知的財産權의 國際的 視點, 國際書院, 동경, 1990
12. ITU-T Doc., Consider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1994.
13. ITU-T Doc., The SPR's Report in some "Lessons Learned" regarding Current Patent Policy Practice of Joint CCITT and ISO/IEC Recommendations Standards

〈약어〉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CEN	: 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CENELEC	: 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CCITT	: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U	: European Union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T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Sector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RCR	: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
TSAG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TSB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C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지상중계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 1) 이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ITU주최의 제3회 Asia Telecom '93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 2) 국내 전기통신관련 공업소유권 중 특허의 경우 등록건수가 1989년 1,104건에서 1993년에는 약 5배인 5,402건으로 증가되었다.

국내 전기통신관련 공업소유권 등록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특 허	1,104	3,407	4,015	4,969	5,402
실용신안	1,886	3,689	3,562	3,259	3,226
의 장	2,623	2,295	2,676	1,893	2,112
계	5,613	9,391	10,253	10,121	10,740

자료 : 제3차 표준화연구협의회(1994. 5.) 발표 자료

- 3) TSAG에서도 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별 논의가 없으며, 다만 관련된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ITU-T / TSAG/DT/110E, WW2, Geneva 14-20 April 1994)
- 4) 여기서 '필수적'이라 함은 ETSI의 용어정의에 의하면, '표준화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형태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지적재산권의 침해없이는 표준에 부합하는 설비 및 방법(Methods)의 제조, 판매, 대여, 기타 차분, 수리, 사용 또는 운용하는 것 등이 상업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기술적 이유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준이 오직 어떤 지적재산권들을 침해하는 기술적 해결에 의해서만 구현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모든 지적재산권들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TSI, IPR Policy & Undertaking Appendix A Annex I의 용어 정의)
역시 일본 RCR의 경우도 필수 공업소유권을 '해당 공업소유권을 침해함이 없이는 표준규격을 만족하는 장치, 기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RCR, 표준규격에 관련되는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관한 기본지침)
- 5) ITU-T (구 CCITT)에서 취급하는 지적재산권정책은 '특허 (Patent)'에 한한다. 비록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포괄적으로 다룬다해도 실제 정책은 특허에 관한 사항임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유럽 ETSI의 경우는 지적재산권정책에 있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라 칭하며 적용범위도 특허는 물론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의 일부, 신지적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工業所有權' (Industrial Property Right)이라 하여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일본도 다른 기구와 마찬가지로 IPR의 약자를 사용하나 이때는 'Intellectual'이 아니고 'Industrial'임에 유의해야 한다.
- 6) Consider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TU-T/TSAG/DT/110E, WW2, Geneva 14-20 April 1994
- 7) 여기서 결의 10란 Resolution No.1 Rules of procedure and working methods of the 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Helsinki, 1993)을 말한다.
- 8) 본 절은 1993년 7월에 채택된 '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를 번역한 것으로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다소 원본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